

소규모합병 공고

(주)두산은 두타물(주)와 2018년 3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 두산이 두타물(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 두산 : 두타물(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가. 상호 : 두타물(주)
 - 나. 본사소재지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75
4. 합병기일 : 2018년 6월 1일
5. (주) 두산과 두타물(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2018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나. 기 간 : 2018년 4월 4일 ~ 2018년 4월 18일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명부주주 : 2018년 4월 18일까지 (주)두산 관리본부 기획관리팀 제출(02-3398-3280)
 - 2) 실질주주 : 2018년 4월 15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8년 4월 3일

주식회사 두산
대표이사 김민철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두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두산과 두타물(주)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2018년 월 일